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5-1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4.

제출자 : 달서구청장(세무과)

1. 제안이유

95. 1. 1 개정된 지방세 조례내용 중 94. 12 지방세 법령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.

2.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9조의 2 제26조의 2, 제266조제4항, 제292조
- 시행령 제231조
- 시행규칙 제117조

3. 주요골자

- 가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시의 조례제정 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삭제(안 제4조)
- 나.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(안 제7조, 제29조, 제33조)
- 다. 비과세·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17조)
- 라. 농·수·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함.(95 개정시 누락)(안 제19조)
- 마.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함.(안 제28조)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제9조 및 제9조의2의”를 제9조의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납기한의 연장”을 “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”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“납부 또는 납입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”을 “기한이 만료되기 전”으로 제2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”을 “기한이 만료된 날”로 “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연장할 수 있다”로 하고 제3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기한”으로 “납기한의 연장 기한내에”를 “연장된 기한내에”로 후단 “납기한”을 “다시”로 하고 제5항 중 “납기한”을 “신고납부기한”으로 “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”를 “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중 “비과세 및 감면적용자”를 “비과세 적용자”로 하고 “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”을 “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“건축물”을 “부동산”으로 한다.

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법 제5장의”를 “법 제234조의 12의”로 “비과세 또는 감면”을 “비과세”로 한다.

제33조 제목 중 “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”를 “비과세적용자의”로 하고 제1항 중 “법 제5장의 규정에”를 “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”로 “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”를 “비과세 받고자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지방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.</p> <p>제7조(납기한의 연장)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.)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제9조의 제7조(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기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②..... 기한 기한이 만료된 날 연 장할 수 있다. ③..... 기한 기한 연장된 기한내에 다시.....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④(생략)</p> <p>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의 만료될 때부터 징수한다.</p> <p>제17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조(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"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. 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신고납부기한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17조(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)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</p> <p>제19조(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동산 2. 부동산 3. 부동산 4. 부동산 <p>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구관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</p> <p>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구매,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</u> 2. <u>보관, 가공,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</u> 3. <u>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</u> 4. <u>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</u> 	<p><삭 제></p>
<p>제29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<u>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</u>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용도, 기타 <u>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,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9조(토지에 대한 신고의 의무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법 제234조의 12의 <u>비과세</u> <u>비과세</u></p>
<p>제33조(<u>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</p> <p>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<u>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</u>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3조(<u>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</u>)</p> <p>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<u>비과세 받고자</u></p>